

광주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가단916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(변경전 상호: 주식회사 B)

소송대리인 C

피고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

변론 종결2022. 6. 10.

판결 선고2022. 7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2019. 11.경 공사계약서(이하 '이 사건 계약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는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제2조 당사자의 지위

발주자: F(대표자: 피고), E

계약자: 원고

제4조 주택철거 및 임목처리 업무일체의 계약금액(VAT 별도)

1. 발주자와 계약자 간의 별목, 제근 뿌리목 폐기물 처리공사업무 일체 공사비는 평당 삼천원(₩ 3,000)으로 한다. (세부사항 협의)
2. 주택가옥철거 약 50채 평당 십오만 원(₩ 150,000)으로 계약한다.

제8조 기타

1. 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 계약과정 발생된 모든 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 특약 협약서

1. 발주자 F(대표자: 피고), 도급자 원고

공사계약 조건: 원고는 발주자 F(대표자: 피고)에게 공사계약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선금 입금한다.

2. 계약조건선금 일금 일억 원(₩ 100,000,000) 발주자에게 입금

1차 계약선금금 2019년 11월 20.일 일천만 원(₩ 10,000,000)

2차 계약선금금 2019년 11월 30.일 사천만 원(₩ 40,000,000)

3차 계약선금금 2019년 12월 30.일 오천만 원(₩ 50,000,000)

3. 선입금: 발주 대표자 피고 주민등록, 인감증명서 각 1통, 차용증 계약자에게 제출

4. 반환조건 및 계약유지조건

1.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2020년 2월 30.일 이내 착공(별목) 조건으로 선금금을 발주자에게 현금을 입금하였다.

2020년 3월 30.일 이전 공사착공이 불가할 시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전액은 반환해야 한다.

나. 원고는 2019. 11. 15.부터 2020. 2. 24.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(사업자명: F, 계좌번호 하나은행:

(계좌번호 1 생략))에 아래와 같이 총 60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1	2019. 11. 15.	10,000,000
2	2019. 11. 28.	20,000,000
3	2020. 1. 23.	20,000,000
4	2020. 2. 24.	10,000,000
합계	60,000,000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는 공사도급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60,000,000원을 송금하였으나, 공사도급 등에 대한 진척이 없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,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바,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,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,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·내용·목적·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36989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,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

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, ① 피고가 아닌 G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, 피고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, ②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계약과정에서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,000,00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상대방인 원고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공사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(특약사항)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. 9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주성